

# 스웨덴의 겐트시스템과 실업보험제도

Gabriella Sjögren Lindquist, Eskil Wadensjö (스톡홀름대학교 스웨덴 사회연구소 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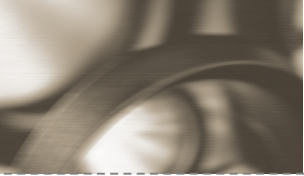
## ■ 서 문

스웨덴에서는 노조가 관리하는 실업보험 기구가 19세기에 최초로 설립되었는데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들에게 해당 시당국은 소득 지원을 할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실업은 스웨덴에서 정치적 이슈였다.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몇몇 산업에서 구조적 실업이 증가했다. 정부 조사 결과 실업보험 제도의 도입 가능성이 연구되었지만, 그 대신 실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저임금의 공공사업이 추천되었다.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해당 시당국이 현금 지원을 하게 하는 정책이 마련되었다. 노조 실업기금은 1920년대 초와 1930년대 초와 같이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심각한 문제를 겪었다.<sup>1)</sup>

1932년 총선 후 집권한 사회민주당은 고용정책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전의 저임금에 비해 시장 임금을 지급하는 공공사업이 선호되었으며 노조가 조직한 실업보험 제도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결정되었다. 겐트 제도는 1935년 스웨덴에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규정이 너무나 엄격해서 많은 노조가 정부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sup>2)</sup> 점차 규정이 바뀌자 노조 실업기금이 정부 지원을 신청하는 편이 더 유리해졌으며 다른 노조들이 새 보험 제도를 마련하도록 유도했다.

1) 노조의 실업보험기금의 역사는 Edebalk (1975 와 1987)를 참조.

2) Edebalk (1990)를 참조.



처음부터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도 그 노조의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했기 때문에, 처음 몇 십년 동안은 그런 선택을 하는 근로자들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점차 노조에 가입하지 않고도 그 노조의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는 것이 수월해졌다. 1997년에는 정부가 노조와 관련되지 않은 특별 실업보험 단체를 설립했으며 이런 단체는 날로 증가했다. 2005년 현재 이러한 기금의 가입자 중 16%가 비노조원이다.

물론 노조원이면서 관련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크게 증가한 보험료로 인해 이 같은 선택이 보편화되었다. 위와 같은 변화와 상관없이 스웨덴은 여전히 겐트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제도는 높은 노조 조직률에 기여했다.<sup>3)</sup>

## ■ 실업보험<sup>4)</sup>

스웨덴의 실업보험은 두 가지 부분, 즉 일반적인 기초 보험(기준 소득)과 소득대비 실업수당으로 구성된다. 실업보험의 이 두 가지 부분은 모두 자산 조사에 따른 것이 아니다. 기준보험금은 현재 실업기금에 가입해 있거나 가입조건을 충족시킬 정도로 오랜 기간 동안(연속적으로 최소 1년 이상 기금 가입자일 것) 가입자가 아니었던 사람에게 주어진다. 신청인은 또한 기초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과 근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기본 조건은 신청인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실업상태이고, 1일 최소 3시간, 일주일 최소 17시간 일할 여건이 되어야 하며, 주어지는 일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고, 고용 센터에 구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고용 센터와 협의하여 개별행동계획을 작성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 조건은 해당 실업자가 실직하기 직전 12개월간 최소 6개월 동안 월 최소 80시간 또는 연속 6개월간 총 480시간(매월 최소 50 시간 이상) 동안 일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이나 질병으로 인한 기간은 최대 두 달까지 근로 기간으로 산정될 수 있다. 보조임금 지급되는 고용, 공공 사업장에서의 보호작업, 퇴직금 지급 기간과 고용 지원을 받는 고용 기간의 경우 근로조건에 포함될

3) 먼저 Clasen and Viebrock (2007), Kjellberg (2006), Viebrock (2006)를 참조.

4) 실업보험에 대한 정보 출처는 스웨덴 실업보험위원회(IAF ; [www.iaf.se](http://www.iaf.se)), Sjögren Lindquist and Wadensjö (2006), Sjögren Lindquist and Wadensjö (2007) 참조.

수 있다.

기초 보험금은 이전소득과 관계없이 상용근로자로 일한 사람이라면 모두 1인당 하루 총 SEK 320(USD 47)을 받게 된다. 전일제가 아닌 시간제로 일한 경우 일일 보험금 지급액은 이전 근로시간과 대비하여 줄어든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수혜자는 최장 450일 동안, 나머지 수혜자들은 최장 300일 동안 보험금을 받게 된다.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5일간의 신청 기간을 거쳐야 한다.


소득대비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가입 자격, 기본 및 근로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소득대비 실업수당의 보험금은 5일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 최장 300일 (부모의 경우 450일) 동안 지급된다. 소득대비 실업수당은 보험금 지급 기간 중 처음 200일 동안 이전 일일 소득의 80%(최대 SEK 850 (USD 126))가 지급되며 이것은 일일 최대 금액인 SEK 680 (USD 100)에 부합한다. 이후 100일간 (부모의 경우 250일간) 보험금은 이전 일일 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된다. 일일 총 최대 지급액은 여전히 SEK 680 이다. 일일 소득은 월 임금의 1/22에 상응한다.

실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구직을 거부할 경우 보험금은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1회 거부시 40일간 25% 줄어들고, 2회 거부시 40일간 50% 줄어들며, 3회 거부시 지급이 중단된다.

2007년 6월 현재 36개의 독립적인 실업기금이 있고 가입자 수는 350만 명 이상이다. 스웨덴의 16~64세의 노동가능인구는 460만 명에 달한다. 같은 연령대의 인구 중 약 130만 명은 노동가능인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업기금은 실업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한다. 고용 센터들은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실업보험을 받는 조건에 부합하는지, 즉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으며 노동시장 프로그램의 적합한 일이나 작업장을 받아들이는지 확인한다. 국가노동시장위원회(AMS) 산하 20개의 지역노동위원회가 조직한 300개의 고용 센터가 있다. 현 정부는 국가노동시장부(National Labour Market Administration)의 조직을 정비하기로 결정했다. 효율성, 유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개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AMS와 20개 지역노동위원회는 문을 닫고 1개의 새로운 기관이 설립될 것이다. 2003년까지 AMS는 실업기금도 담당했었는데 2004년부터는 이 역할을 스웨덴 실업보험위원회(IAF)가 맡게 되었다.

실업보험의 재정은 주로 정부 예산에서 나오지만 실업기금도 한 몫을 담당한다. 사용자들은 정부에 세금(labor market fee)을 지급한다. 2005년에 이 세금은 실업보험 비용의 87%를 담당했으며, 실업기금의 회비가 나머지 13%를 담당했다.

2006년 한 해 479,285명이 소득대비 실업수당의 수혜자가 되었고 85,518명은 기초 보험금을 지



급 받았다. 이는 각각 전체 노동가능인구의 10.5%와 1.9%에 달하는 숫자이다. 실업보험 수혜자 중 15.5%는 기초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 ■ 협약에 따른 또는 협약에 기초한 보험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실업기금이 제공하는 실업급여가 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지원은 아니다. 그 밖에 다른 부가적인 지원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근로자가 실직상태가 된 이후에 제공되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sup>5)</sup> 기본적으로 노조와 사용자단체 사이의 협약, 가입자에 대한 보험 적용(특정 노조원은 모두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노조를 통한 개별적인 보험증권의 세 가지 해결책이 있다. 협약에 기초한 해결책이 제일 먼저 생겨났다. 왜 협약에 기초한 해결책이 유일한 형태가 아니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은 사용자들이 이 형태의 해결책에 동의하지 않아서 노조 단체들이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은 노조들이 특히 자체 노조원들을 위해 보험 적용과 개별 보험증권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 노조원들을 모집할 때 논란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약에 기초한 보험은 노조에 의해 협상되기는 하지만, 노조원 뿐 아니라 협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 다음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의 75%에 적용되는 4 가지 주요 협약에 대한 설명이다.

### 중앙정부 부문 - 근로자 안정협약 (240,000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 재단 (Trygghetsstiftelsen)과 연계됨)

작업 단축으로 인해 통보를 받거나 재배치시 새로 배정된 일을 맡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한 근로자들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고용되었다면 실업시 위 협약에 의거 추가급여, 즉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sup>6)</sup>. 전체 근로자 중 약 92%가 위 조건을 충족한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동일한 기간 동

5) 관련된 정책 형태는 법으로 규정된 해고 통지 기간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단체협약으로 이 기간이 연장된다. Danhard (2004) 와 Jans (2002) 참조.

6) 작업 단축으로 인해 계약이 갱신되지 않아서 실업자가 된 기간제 근로자 중 최소 연속 3년이상 고용되었던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는다.

안 지급된다. 실업보험의 소득대비 실업수당 수급자들에게 제공되는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합해서 처음 200일간은 실직 전 임금의 80%에, 나머지 100일간은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는 실업급여 최대치 이하의 임금을 받았던 실업자에게는 퇴직금이 제공되지 않음을 뜻한다.

실업보험의 기초 보험 수급 자격만을 가진 사람의 경우 실직상태에 놓인 처음 200일간 월 임금의 80%와 이후 100일간 월 임금의 70%와 근로자가 소득대비 실업수당을 받았더라면 지급되었을 금액의 차이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받는다. 일자리 재단의 재정은 사회적 파트너들이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금액에 따라 할당된다.


### **시당국과 주위원회 – AGF-KL(약 1,100,000 명의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

시당국과 주위원회 근로자들은 작업 단축으로 인한 통보를 받을 경우 AGF-KL 협약에 의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일부는 일괄 급여로, 다른 일부는 정기적 급여로 구성된다. AGF-KL은 보험이 아니지만 사용자는 일괄 급여와 정기적 급여를 모두 총당한다.

일괄 급여 수급자격은 추가 통보가 있을 때까지 고용되고 그때까지 최소 3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25세 이상이고 의무퇴직연령 이하인 사람에게 주어진다. 근로자의 약 72%가 이 조건을 충족한다. 일괄 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해당 지역 공공부문에서 일한 근무연수에 월급의 1/3을 곱한 금액에 상응한다. 최대 일괄 급여는 해당 근로자의 6개월간의 월급에 달한다.

정기적 급여 수급자격은 연령과 해당 부문에서의 근무 기간에 근거한다. 최저 연령은 45세이며 45세 근로자의 필요 근무연수는 17년이다. 근무 기간 조건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줄어든다. 이 부문의 근로자 중 40%가 정기적 급여 수급자격을 가진다. 고용 기간은 연속적일 필요는 없으며 해당 부문에서 근무한 전체 기간이 중요하다. 한 근로자가 일괄 급여와 정기적 급여를 모두 받을 수는 없다. 정기적 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 근로자가 일괄 급여 신청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신 일괄 급여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정기적 퇴직급여와 소득대비급여의 합은 처음 200일 동안은 실직 전 해당 근로자의 월 임금의 80%, 그리고 그 후 100일 동안은 70%에 상응한다. 실업보험의 기초급여 자격만을 갖춘 근로자의 정기적 퇴직급여는 소득대비 실업수당 수급자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된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여전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기적 퇴직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정기적 급여의 금액은 연금 수혜기간과 임금에 기초한다. 즉 급여액은 임금의 60% 수준이다. 이 급여는 개인이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실업상태에 놓이는 기간 내내 지급된다. 퇴직연령이 되면, 대신 시당국과 주위원회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직업연금을 받게 된다.

### 민간부문의 육체노동자 - AGB<sup>7)</sup>(900,000명의 근로자들이 근로자 안정 기금 ((TSL)의 적용을 받음)

퇴직보험인 AGB는 협약에 기초한 보험으로 스웨덴 기업 및 LO 연맹의 협약에 포함된 육체 노동자들에게 적용된다. 이 보험은 일찌감치 1967년에 마련되었고,<sup>8)</sup> 협약 내용은 그간 여러 차례 바뀌었다. 가장 최근의 실직 보조금에 대한 협약인 AGB는 2005년 4월부터 적용된다. AGB 신청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 단축에 따라 실직 통보를 받고, 고용 종료시 40세 이상이었으며, AGB 보험의 적용을 받는 회사들에 5년 연속 최소 50개월간 고용되었던 사람이다. 이 협약의 적용 범위에 있는 근로자들 중 최소 40%가 이 급여를 신청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

AGB는 고용이 종료될 때 일괄 지급된다. 금액은 실직 당시 근로자 연령에 따라 결정된다. 40~49세 근로자는 SEK 26,000 (USD 3,846)를, 50~59세 근로자는 SEK 27,100 (USD 4,009)와 남은 생애 동안 매년 SEK 1,100 (USD 163)를, 60~64세 근로자는 SEK 38,100 (USD 5,636)를 받는다. 부분적 실업의 경우 AGB는 그에 대비해 줄어든다.

### 민간부문 사무직 근로자 - AGE(700,000명의 근로자들이 근로자안정위원회 (TRR)의 적용을 받음)

스웨덴 기업 연맹과 PTK(민간부문 사무직 근로자들의 주요 노동조합의 연합) 간의 협약에 따르면, 작업 단축으로 불필요해진 근로자는 퇴직금인 AGE를 받을 수 있다. AGE의 급여 수준은 처음

7) AGB 보험의 초기 상황은 Edebalk and Wadensjö (1980, 1989) 참조.

8) 초기인 1964년에는 협약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6개월의 수급 기간 동안은 월급과 소득대비 실업수당을 합한 금액의 70% 수준이며, 그 이후에는 50%로 줄어든다.<sup>9)</sup> 위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는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진다. 40~44세 근로자들에게는 6개월간, 45~59세 근로자들에게는 12개월간, 60~64세 근로자들에게는 18개월간 급여가 지급된다. 보상은 실업보험 적용 기간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부분 실업의 경우, AGE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근로시간에 대해 제공되지만, 실업은 최소 20%이어야 한다.

AGE 수급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작업 단축으로 인해 실업 통보를 받고 40세 이상이며, 지난 5년간 주당 최소 5시간 이상 근무했고, 구직을 희망하여 고용 센터에 등록한 사람이다. 이 부분의 근로자 중 약 50%가 협약에 기초한 보험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

## ■ 민간 단체와 개별 보험


법이나 노사 단체의 협약에 의해 정해지는 급여 이외에, 노조 단체들이 조직한 민간 보험이 있다. 여기에는 모든 노조원에 적용되는 단체 보험과 개별 노조원들이 소속 노조를 통해 신청한 보험 증권이 있다. 노조에는 속하지 않지만 실업보험 단체에 속한 근로자들은 개별적인 민간 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sup>10)</sup>

보상의 상한선이나 수급 기간 등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보험 제도의 내용은 분야가 달라도 대체로 유사하다. 한 노조의 노조원 전체에 적용되는 단체보험은 실업 시점으로부터 120~200일간 임금과 소득대비 실업급여를 합한 금액의 80%를 보상하는데 액수는 최대 SEK 35,000 (USD 5,178)~ SEK 100,000 (USD 14,793)이며, 수급자가 61~65세가 되면 지급이 종료된다. 몇몇 노조들은 회원들의 수급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금 상한액을 높인 개별 보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노조가 소속 노조원들에게 제공하거나 개별적으로 직접 보험 회사로부터 구입할 수 있는 보험들은 대체로 수급 기간이 280~330일로 더 길고, 대체율(공공 실업급여에서만 상한선 이상의 소득

9) 2007년 기준으로 SEK 40,300 (USD 5,962) (2007년 가격 기준 소득)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대체율은 이 상한선보다 25% 이상 높다.

10) 스웨덴의 민간 소득 보험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새로운 실업에 따른 소득 보험이 계속 도입된다. 한 예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소지자들, 또는 주택소유자협회(Villaägarna)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실업보험이 있다.



을 제공하는) 또한 공공 실업보험의 대체율과 같다(처음 200일간 80% 나머지 100일간 70%). 개별적으로 구입하는 보험과 한 노조의 전체 노조원에 적용되는 단체보험의 소득 및 연령 상한선은 비슷하다.

## ■ 현재 상황

스웨덴에는 2006년 9월 새 우파 연합정부가 들어섰다. 선거 기간에 이들이 내세운 주요 공약 중 하나는 근로 유인의 강화였다. 이 우파 연합이 정권을 잡게 된 이후 몇 가지 새로운 실업대책을 내놓았다. 그에 따른 실업급여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2007년 1월 1일 이전에는 실업급여의 상한선이 처음 200일간 일일 최대 SEK 730(USD 108)이고 나머지 100일간은 SEK 680(USD 100)이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이 상한선은 처음 200일간 SEK 730(USD 108)에서 SEK 680(USD 100)로 줄어들어 전 수급 기간 동안 동일하게 유지된다. 전체 근로자의 75% 이상이 실업급여의 이 상한선에 해당된다.

새 정부는 급여 수준도 낮추었다. 2007년 1월 1일 이전에 급여 수준은 전 수급 기간 동안 80%였지만, 새 제도에 따라 처음 200일 이후에는 70%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 같은 감축의 취지는 노동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실업급여가 실업자들에게 덜 유리해짐과 동시에 보험료는 더욱 비싸졌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실업기금이 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충당하게 됨에 따라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 기금은 비실업자들의 보험료를 월 최대 SEK 300(USD 44)까지 인상할 수 있다. 회원 보험료의 이와 같은 인상은 실업기금의 회원수 감소로 이어졌다.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 사이에 242,000명이 실업기금에서 탈퇴했는데 이는 전체 회원의 6%에 달한다.

실업기금으로부터의 대량 탈퇴에 대한 반응으로 노동부 장관은 정부가 실업기금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실업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2007년 여름 이전에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의 의도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실업보험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2007년 3월 22일 정부는 노동시장정책의 개혁 방안에 대한 새로운 제안(제안 2006/07 : 89)을 제시했다. 의회는 2007년 7월 2일부터 변화되는 내용을 담은 이 제안을 승인했다. 2007년 7월 2일



이전에는 실업급여의 2차 수급 가능성이 있었고, 실업기금은 보험 기간이 만료될 위험이 있고 고용 센터가 해당 구직자를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이 없음을 실업기금에 통보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수급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새 정부는 연장 수급 기간에 대한 보상 수준을 80%에서 65%로 낮추었다. 2007년 7월 2일부로 실업급여의 2차 수급 기간은 폐지되었고 같은 날부터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300일로 줄어들었다(실업자가 18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인 경우는 450일).

## ■ 결론

젠트 모델은 1935년 스웨덴에 도입되었다. 이 실업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은 실업자들에 대한 보상 수준처럼 점차 확대되었다. 젠트 제도는 노조 조직률 상승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여겨진다.

1990년대 초 경제위기 이후 보상률은 꾸준히 낮아져 가입의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실업 위험은 더 높아져서 이것이 기금의 가입 이유가 되고 있다. 1990년대에는 노조에는 가입하지 않고 실업기금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여전히 기금 가입자의 다수는 노조원이었다. 젠트 제도는 여전히 근로자들을 노조로 이끄는 하나의 요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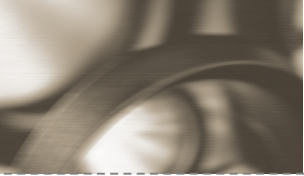
2006년 9월 총선으로 바 정부가 주도한 최근의 실업보험의 변화는 낮은 보상과 높은 보험료를 뜻한다. 지금은 노조와 관계된 실업기금보다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실업기금의 가입을 강제화함으로써 실업보험을 의무화하려고 한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젠트 제도를 갖게 될 것이다. **KLL**

---

## 참고문헌

---

- Clasen, Jochen and Viebrock, Elke (2007), “Voluntary unemployment insurance and trade union membership. Investigating the connections in Denmark and Sweden”, paper presented at the 5<sup>th</sup>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Security, Warsaw, 5–7 March 2007.
- Danhard, Erik (2004), *Lön i konkurs med 2004 års regler om löneförmånsrätt och lönegaranti*, Uppsala : Lars Åhnberg AB.



- Edebalk, Per Gunnar (1975), *Arbetslöshetsförsäkringsdebatten. En studie i svensk socialpolitik 1892~1934*, doctoral dissertation, Skrifter utgivna av Ekonomisk–historiska Föreningen i Lund, nr 17.
- Edebalk, Per Gunnar (1987), “Den fackliga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i Sverige 1892~1934”, *Arkiv*, nr 36–37.
- Edebalk, Per Gunnar (1990), “Från motstånd till genombrott – den svenska arbetslöshetsförsäkringen 1935~1954”, *Arkiv*, nr 45.
- Edebalk, Per Gunnar and Wadensjö, Eskil (1980), *Avgångsbidrag*, Lund : Liber.
- Edebalk, Per Gunnar and Wadensjö, Eskil (1989), *Arbetsmarknadsförsäkringar*, Report to ESO, Ds 1989 : 68.
- Jans, Ann–Christin (2002), *Notifications and Job Losses on the Swedish Labour Market*, Doctoral Dissertations no. 54,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tockholm University.
- Kjellberg, Anders (2006), “The Swedish unemployment insurance–will the Ghent system survive?”, *Transfer–European Review of Labour and Research*, Vol. 12 (1), pp. 87–98.
- Sjögren Lindquist, Gabriella and Wadensjö, Eskil (2006), *National Social Insurance–not the whole picture. Supplementary compensation in case of loss of income*, Report for ESS, Expert Group on Economic Studies 2006 : 5, Ministry of Finance.
- Sjögren Lindquist, G and Wadensjö, Eskil (2007), *Ett svårt pussel–kompletterande ersättningar vid inkomstbortfall*, Rapport till ESS 2007 : 1.
- Viebrock, Elke (2006), “Reforming unemployment insurance in Denmark and Sweden”, 4<sup>th</sup> Annual ESPAnet Conference 21–23 September 2006, Bremen.
- Wadensjö, Eskil and Sjögren, Gabriella (2000), *Arbetslinjen för äldre i praktiken*, En studie för Riksdagens revisorer, Stockholm : Swedish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Stockholm University.
- Web pages : [www.iaf.se](http://www.iaf.se)